

직원과 수급자와의 상호존중

1. 폭언 · 폭행 · 성희롱 발생예방 수칙

- ♣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는 등 직원에게 욕설, 협박,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.
- ♣ 음란한 표현,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성적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.

2. 상호존중 수칙

- ♣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비하 표현은 삼가고, 존칭과 적절한 호칭('간호사')을 사용해 주세요.
- ♣ 비하어(아줌마 등)나 비속어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.

3.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구 금지

- ♣ 서비스 제공 중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.
- ♣ 서비스 받으시는 어르신 외의 가족분, 친구분 등은 제공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

장기요양요원(간호사)과 수급자(보호자)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,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,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